

202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8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11. 1.
4. 회부일자 : 2022. 11. 3.

II. 제안이유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

III.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계획(안)	2022년도 계획	증 감 액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4,701,641	15,662,190	△960,549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52조<sup>1)</sup>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운용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안전공제회’)<sup>3)</sup>가 맡고 있습니다.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sup>4)</sup>에 따라 특정한

---

1)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2)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영한다.

3)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동되는 기금인바,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sup>5)</sup>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sup>6)</sup>

## 나. 기금 총괄

- 202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5억 3백만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 기타 80억 2천 9백만원 등 147억 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90억 1천 9백만원, 인력운영비 12억 9천 5백만원, 기본경비 2억 4천 9백만원, 예치금 4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표-1]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3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14,701,641	15,662,190	-960,549	합 계	14,701,641	15,662,190	-960,549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비용자성 사업비	9,018,876	7,641,011	1,377,865
기부금	0	0	0	용자성 사업비	0	0	0
용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1,295,328	1,274,035	21,293
예치금 회수	6,502,814	8,471,786	-1,968,972	기본경비	249,150	244,330	4,820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동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6) 법제처(13-0013),(2013.05.07). '교육부-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인지 여부' 참조.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3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 감 (C=A-B)
이자수입	170,000	23,880	146,120	예비비	4,138,287	6,502,814	-2,364,527
기 타	8,028,827	7,166,524	862,303	기 타	0	0	0

#### 다. 수입계획

-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147억 2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65억 3백만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73억 3천 9백만원, 소방사업수익 5억원 등) 80억 2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156억 6천 2백만원) 대비 9억 6천 1백만원(△6.1%)이 감소한 것입니다.
- 이는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액(84억 7천 2백만원) 대비 19억 6천 9백만원(△23.2%)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표-2]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4,701,641	15,662,190	△960,549	△6.1%
기부금	교육청교육금고 기부금	0	0	0	0%
예치금회수	소 계	6,502,814	8,471,786	△1,968,972	△23.2%
	사무국 임차보증금	248,348	248,348	0	0%
	학교안전공제기금 이월금	4,942,694	6,732,552	△1,789,858	△26.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98,738	124,638	△25,900	△20.8%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213,034	1,366,248	△153,214	△11.2%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이자수입	이자수입	170,000	23,880	146,120	611.9%
기타수입	소 계	8,208,827	7,166,524	862,303	12.0%
	공제료 수입	7,338,874	6,859,931	478,943	7.0%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69,693	31,117	38,576	124.0%
	소방사업 수익	500,000	160,000	340,000	212.5%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101,760	94,976	6,784	7.1%
	법인세 환급금	18,000	20,000	△2,000	△10.0%
	카드포인트	500	500	0	0.0 %

### 1)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공제료 수입’ 및 ‘소방사업수익’ 등 사실상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으로 2023년도에는 총 80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71억 6천 7백만원) 대비 12.0%(8억 6천 2백만원) 증가되었는바, 이는 ‘공제료 수입’이 7.0% ‘소방사업수입’이 212.5%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공제료 수입’은 73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68억 6천만원) 대비 4억 7천 9백만원(7.0%)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 기준을 정해 고시<sup>7)</sup>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교육부 산정 공제료 단가는 학생 1인당 유치원 3,100원, 초등학교 4,800원, 중학교 9,800원, 고등학교 14,000원으로 2022년도 공제료에 비해 평균 12.0% 인상된 것입니다.

7) 교육부고시(제 2022-26호, 2022. 10. 18).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표-3] 교육부고시 공제료**

(단위: 원)

구분	2023년 공제료	2022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3,100	2,800
초등학교	4,800	4,300
중학교	9,800	9,100
고등학교	14,000	12,100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제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에서 공제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금번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액(교육부고시 제 2022-26호)을 기준으로 공제료에서 5%를 가산하여 계상하였는바, 유치원은 3,200원, 초등학교는 5,350원, 중학교는 10,300원, 고등학교는 14,440원을 적용하여 공제료를 책정하였습니다.

**[표-4] 서울시 최종 공제료 단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2023년 서울시 공제료 (고시공제료 대비 인상률)	3,200 (3.1%)	5,350 (10.3%)	10,300 (4.9%)	14,440 (3.0%)	8,320 (5.0%)

-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3년도 공제료 수입은 서울시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5.6%(50,408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가가 전년 대비 총 17% 인상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교육부가 물가 상승,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인상한 공제료보다 5%나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공제료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학교급별 공제료 대상 현황

(단위: 명)

	2023년			2022년		
	교육청 일괄납부 대상	공제회 학교별 징수	계	교육청 일괄납부 대상	공제회 학교별 징수	계
유치원	15,160	46,458	61,618	15,780	52,203	67,983
초등학교	367,579	19,440	387,019	380,465	18,577	399,042
중학교	202,697	1,774	204,471	208,321	2,254	210,575
고등학교	174,790	22,267	197,057	181,928	35,842	217,770
특수학교	524	460	984	537	456	993
기타학교	1,631	1,915	3,546	1,891	6,849	8,740
배움터지킴이	1,364	108	1,472	1,340	108	1,448
합계	763,745	92,422	856,167	790,262	116,289	906,551

○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참여자<sup>8)</sup>’로 인정하면서 2022년에 처음으로 ‘배움터지킴이 공제료’를 계상하였고,<sup>9)</sup>

2023년도에도 공제료 수입으로 ‘배움터지킴이’를 2천 1백만원 책

8)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9) 2013년 교육부는 ‘배움터지킴이’를 교육활동참여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교육부(2013.2.15.). 배움터지킴이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지급 대상 포함 관련 안내)

정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원봉사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sup>10)</sup> 보상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소방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수익사업으로<sup>11)</sup>, 2017년도에 수입금 1억 7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익이 증대되어 왔고, 2023년도에는 그 수익이 27억 1천 9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의 대부분이 소방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비용으로 지출되어 수익 규모 대비 기금 전출금 규모가 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표-6] 소방시설점검 최근 5년간 수입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계약학교수	전년도이월액(A)	수입(B)	지출				수지차(D=B-C)	다음연도이월액(E=A+D)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2017	408	96,323	1,070,440	120,000	320,580	577,408	1,017,988	52,452	148,775
2018	476	148,775	1,262,084	120,000	392,758	744,595	1,257,353	4,731	153,506
2019	534	153,506	1,498,646	120,000	379,777	820,397	1,320,174	178,472	331,978
2020	577	331,978	1,658,565	160,000	394,221	939,070	1,493,291	165,274	497,252
2021	592	497,252	1,748,672	271,000	393,442	969,935	1,634,377	114,295	611,547
2022	600	515,490	1,751,300	160,000	488,213	1,108,008	1,756,221	-4,921	510,569
2023	600	770,000	1,944,000	500,000	523,907	1,180,998	2,204,905	-260,905	509,095

10)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인력은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회의 피공제자 대상에서 제외됨.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학교안전공제회는 2023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12.5%(3억 4천만원) 증가된 5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에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을 통해 소방사업 수익 증대는 물론 공제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확대하여 기금 수입 증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up>12)</sup>.

○ 아울러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 이외에 교원안심·여행자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동 사업의 수입액은 5억 8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 4억 9백만원, 운영비 1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 9백만원의 예치금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에서 매년 수입액 대비 10% 정도를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교원안심·여행자공제사업에서도 수입액의 10% 정도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7] 2023년도 교원안심·여행자공제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이월금 (예치금)	
		교원안심 공제료	여행자 공제료*	이자 수입	구상금 (교원)	이월금	소계	사업비	운영비		소계
2023	예산액	200,000	200,000	1,020	5,000	178,000	584,020	409,910	15,100	425,010	159,010
	비율	34%	34%	0%	1%	30%	100%	70%	3%	73%	27%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 예치금 회수

- ‘예치금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65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84억 7천 2백만원) 대비 19억 6천 9백만원(△23.2%)이 감소하였습니다.

[표-8] 예치금회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액(%)
예치금회수	6,502,814	8,471,786	1,968,972(△23.2%)

- 그러나 예치금을 제외한 동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은 수입(71억 9천) 보다 지출(105억 6천 3백만원)이 많은바, 2023년 연도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23억 6천 5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9] 예치금 제외 수입 대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입액 (a)	지출액 (b)	잔액 (a-b)
2018	5,869	7,897	△2,028
2019	6,609	8,247	△1,638
2020	7,264	6,221	1,043
2021	6,837	7,227	△390
2022	7,190	9,171	△1,981
<b>2023</b>	<b>8,199</b>	<b>10,563</b>	<b>△2,365</b>

- 이와 같은 적자로 인해 2023년도말 기금의 예치금(41억 3천 8백만원)은 전년도 예치금(65억 3백만원)보다 23억 6천 5백만원( $\Delta$  27.3%)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공제료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조직진단 및 사업진단을 시행해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0] 연도별 예치금현황

(단위: 천원)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8,062,297	7,671,855	6,502,814	4,138,287	$\Delta$ 2,364.527

## 라. 지출계획

-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계획은 공제사업 83억 4천만원, 예방사업 3억 8천 6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2천 7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2억 6천 6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4천 4백만원, 예비비 41억 3천 8백만원으로 2022년(156억 6천 2백만원) 대비 9억 6천 1백만원(6.1%) 감소된 147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기금 지출의 주된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전년도(65억 3백만원)보다 23억 6천 5백만원( $\Delta$ 36.4%)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표-11]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	-------	-----

			2023년도(A)	2022년도(B)	증감액 (A-B)	증감율
학교 안전 망 구축	공제 사업	공제급여 지급	7,859,052	6,602,655	1,256,397	19.0
		심사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40,200	32,820	7,380	22.5
		보상심사위원회	16,800	21,000	△4,200	△20.0
		소송업무 수행	214,940	164,440	50,500	30.7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비용지원	25,500	25,500	0	-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23,200	93,000	30,200	32.5
		중앙회 분담금	60,000	60,000	0	0.0
		소계	8,339,692	6,999,415	1,340,277	19.1
	예방사업	386,214	365,626	20,588	5.6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26,980	25,980	1,000	3.8	
	학교폭력피해지원	265,990	249,990	16,000	6.4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0	0	0
인력 자원 운용	인건비		1,271,528	1,250,235	21,293	1.7
	업무추진비		23,800	23,800	0	0.0
	운영비		249,150	244,330	4,820	2.0
	소 계		1,544,478	1,518,365	26,113	1.7
예 비 비	보유준비금		2,992,725	5,191,042	△2,198,317	△42.3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72,758	98,738	△25,980	△26.3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1,072,804	1,213,034	△140,230	△11.6
	소 계		4,138,287	6,502,814	△2,364,527	△36.4
합계			14,701,641	15,662,190	△960,549	△6.1

## 1) 공제사업

- ‘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사업 총 지출액(83억 4천만원)의 94.2%는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공제급여 지급’(78억 5천 9백만원)은 전년도(66억 3백만원) 대비 12억 5천 6백만원(19.0%)이 증가하였습니다.

- 동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제급여 지급 내역 중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먼저 학교안전공제회는 요양급여(49억 5천 9백만원)가 전년도(43억 9천 8백만원) 보다 5억 6천 1백만원(12.8%)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거의 정상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요양급여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12] 요양급여 예산 증액 현황

연도	예산액		증감액 (B-A) (단위: 천원)	증감율
	산출기초	금액 (단위: 천원)		
2022 (A)	399,825원 × 11,000 건	4,398,075,000원	561,295	12.8%
2023 (B)	381,490원 × 13,000 건	4,959,370,000원		

-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3년간 요양급여의 지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 3년간 요양급여 지출액 평균은 37억 4천만원, 평균 지급 건수는 12,597건인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2023년도 요양급여 산출내역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5년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가장 높았던 2019년(건수: 13,429건, 지급액: 42억 2천 3백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인바, 학교안전공제회는 보다 적절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 2023년도 장해급여 예산액(22억 4천 4백만원)은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 지출액(20억 7천 6백만원)과 유사하나 2023년도 지급 건수(23건)는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 지급 건수(42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산출되어 있는바, 건수별 요양급여 지급액 등 장해급여 지급 산출액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3] 최근 5년간 공제료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등	계
2017년	건수	12,538	45	0	2	0	12,585
	금액	3,621,514	1,677,769	0	44,918	0	5,344,201
2018년	건수	11,823	41	0	0	0	11,864
	금액	3,267,590	2,611,088	0	0	0	5,878,678
2019년	건수	13,429	39	0	2	0	13,470
	금액	4,223,409	1,938,673	0	0	0	6,162,082
2020년	건수	5,904	40	0	2	0	5,946
	금액	2,254,902	1,800,822	0	209,045	0	4,264,769
2021년	건수	7,047	25	0	0	0	7,072
	금액	2,578,055	2,403,966	0	0	0	4,982,021
2022년 (11월2일)	건수	10,482	37	0	0	2	10,521
	금액	3,678,936	1,906,468			80,000	5,665,404

○ 그 외 ‘공제사업’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업무 수행 (2억 1천 5백만원) 및 보상심사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1천 7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공제료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예방사업

○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3억 6천 6백만원) 대비 2천 1백만원(△5.7%) 증가한 3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에 4천 5백만원,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에 5천 8백만원,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에 2억 1천 7백만원,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에 2억 1천 7백만원, 학교안전컨설팅단운영에 5천만원, 조직·경영혁신에 1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4] 예방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내역	'23년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감 (C=A-B)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45,250	51,076	△5,826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	58,434	19,400	39,034
교육청 연계 예방사업	-	-	-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	217,040	255,400	△38,360
학교안전컨설팅단운영	50,490	24,750	75,740
조직.경영혁신	15,000	15,000	-

- 동 사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예방사업 중 학교 안전 사고 관련 사례 집 및 통계집을 발간·배포하는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 예산(5천 8백만원)이 전년도(1천 9백만원) 보다 3천 9백만원 (201.2%) 증가했기 때문으로, 특히 사례집 발간 예산이 3천 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발간 예산 소요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례 조사 및 연구 예산은 사례집 발간 총 예산(5천 6백만원)의 10.8%(7백만원)에 불과하고 80.0%의 예산은 교재 인쇄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며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동 사업의 사례 조사 및 연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연구의 질적 수준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5]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 사업 세부 내역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B)
	산출기초	금액(A)	
사례 조사·연구 및 사례집 제작	302,450원 × 20일	6,049,000	10,500,000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B)
	산출기초	금액(A)	
사례집 검수	226,800원× 3명	680,400	1,900,000
디자인(사고그림)	30,000원×100건	3,000,000	0
교재 디자인	10,000원×150장	1,500,000	2,000,000
교재 제작	20,000원×2,250권	45,000,000	5,000,000
소계		56,229,400	19,400,000

#### 4)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계획은 학교안전망구축(공제사업, 예방사업), 인적자원운용(인건비),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지출액(147억 2백만원)은 전년도(156억 6천 2백만원)보다 9억 6천 1백만원 감액되었으나 실제 지출 내역을 구성별로 살펴보면,

지출액 중 학교안전망구축(공제사업, 예방사업)은 90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76억 4천 1백만원)보다 13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인적자원운용(인건비)도 15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15억 1천 8백만원) 보다 2천 6백만원이 증가였습니다.

- 반면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등)는 41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65억 3백만원) 보다 23억 6천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이는 2023년도 지출계획에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인한 지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예비비 및 예치금 감소는 현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2021년 63억 9

천 3백만원에서 2022년 56억 9천 1백만원, 2023년 41억 3천 8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표-16] 최근 3년간 예비비 및 기타 현황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sup>13)</sup>	2023년
6,939,213	5,691,163	4,138,287

- 더욱이 학교안전공제회는 202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을 8억원 증액하고 예비비도 65억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23년도 운용계획안 지출계획(공제사업, 예방사업, 인건비)을 수립하면서 예비비를 다시 41억 3천 8백만원 수준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 이처럼 공제료 및 소방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의 예비비가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공제사업의 안일한 운용과 학교안전공제회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요구하기에 앞서,<sup>14)</sup> 기금 운용 및 공제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기금을 비롯한 기관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붙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p.165. “학교안전사고 시 전액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공제료 책정 및 교육청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3.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3.25.] [대통령령 제32546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1.7.] [교육부령 제288호, 2022. 11. 7., 일부개정]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